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2조(권한의 위임) (생략) 1. ~ 5. (생략) <신설>	제2조(권한의 위임) (현행과 같음) 1. ~ 5. (현행과 같음) 6. 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제6호의 채권·채무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(주민등록표 초본에 한정한다)